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가 공공나노팹센터를 지정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노팹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나노팹센터 또는 공공나노팹센터가 소속된 법인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728호, 2025. 1. 31. 공포, 8.1. 시행)됨에 따라, 공공나노팹센터의 지정과 역할,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과 역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나노기술인력양성을 지원해야 하는 공공나노팹센터 역할을 명시(안 제10조제1항제3호, 제10조제4항제1호)
-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 한 공공나노팹센터의 범위 및 운영,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다.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국내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나노팹 통합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정의(안 제11조의2 신설)

라.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간 연계·협력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위한 전담기관의 업무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의3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나노팹센터를”을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나노팹 운영기관”이라 하며, 공공나노팹센터를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구축된 나노팹센터”를 “지정된 공공나노팹센터”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나노팹센터)”를 “(공공나노팹센터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②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나노기술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2. 나노기술 분야 연구개발 및 산업계·학계·연구계 등과 공동연구개발

3. 나노기술 관련 기업 기술지원 및 입주환경 조성

4. 나노기술 보급·육성·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5. 그 밖에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공공나노랩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나노랩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매년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불량하거나 공공나노랩센터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나노랩 통합정보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나노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나노랩 운영기관의 장비·시설 이용 신청·관리 통합서비스

2. 나노랩 운영기관의 장비·시설 이용 신청 진행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3. 나노랩 운영기관별 장비·시설 이용 예약 가능 시간 추천 서비스

4. 나노팹 운영기관이 보유하는 장비·시설 정보 제공 서비스
5. 그 밖에 나노팹 운영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관리 서비스 등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2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나노팹 운영기관 간 연계·협력 지원
 2. 국내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나노팹 운영기관의 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4. 나노팹 운영기관 간의 시설·장비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공공나노팹센터 간 기능 조정 및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6. 공공나노팹센터 연구개발 지원 실적, 안전 관리 및 경영 평가 등
 7. 그 밖에 나노팹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전담기관은 전년도 업무실적과 해당연도의 업무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실적 등을 매년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결과 업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나노기술인력의 양성)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나노기술인력의 양성)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나노팹센터를 활용한 교육·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u>	3. <u>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나노팹 운영기관”이라 하 며, 공공나노팹센터를 포함한 다)을</u> -----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나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업 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 음 각호와 같다.	④----- ----- ----- -----.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u>구축된 나노팹센터</u>	1. ----- -- <u>지정된 공공나노팹센터</u>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1조(<u>나노팹센터</u>) 법 제11조제2 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팹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재정	제11조(<u>공공나노팹센터 지정 등</u>) ①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u> <u>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u> <u>호의 기관을 공공나노팹센터로</u>

및 인력 등을 갖추 때까지 한시
적으로 다른 법인 또는 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지정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
른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중
합기술원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②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나노기술 관련 국내외 교류
· 협력

2. 나노기술 분야 연구개발 및
산업계·학계·연구계 등과
공동연구개발

3. 나노기술 관련 기업 기술지
원 및 입주환경 조성

4. 나노기술 보급·육성·확산
을 위한 기반 구축

5. 그 밖에 나노기술의 연구기
반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공공나노랩센터는 전년도 사
업실적과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나노랩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매년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불량하거나 공공나노랩센터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의2(나노랩 통합정보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나노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나노랩 운영기관의 장비·시설 이용 신청·관리 통합서비스
2. 나노랩 운영기관의 장비·시설 이용 신청 진행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3. 나노랩 운영기관별 장비·시설 이용 예약 가능 시간 추천 서비스
4. 나노랩 운영기관이 보유하는

<신 설>

- 장비·시설 정보 제공 서비스
5. 그 밖에 나노팹 운영기관 이
용의 편의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관리 서비스 등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 ① 법 제11조2제3항에 따른 전
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나노팹 운영기관 간 연계·
협력 지원
 2. 국내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
의 구축 및 운영
 3. 나노팹 운영기관의 성과 제
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4. 나노팹 운영기관 간의 시설
· 장비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
한 지원
 5. 공공나노팹센터 간 기능 조
정 및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6. 공공나노팹센터 연구개발 지
원 실적, 안전 관리 및 경영
평가 등
 7. 그 밖에 나노팹 공동활용 촉
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전담기관은 전년도 업무실적
과 해당연도의 업무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실적 등을 매년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결과 업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연 락 처	(044) 202 - 4541